

의안 번호	제3581호
----------	--------

#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02월 28일 김기남, 권민찬 의원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03월 1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03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03월 18일

## 2. 개정이유

- 기존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자의 사망 후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으나, 생전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, 배우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문구 삭제 (안 제11조제1항)
- 나.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분리하여 명시(안 제11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)
- 다.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신설(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)
- 라. 기타 띄어쓰기 수정 및 용어 순화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첨부서류 : 없음

#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가보훈기본법」”을 “「국가보훈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“보훈단체”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「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·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우”를 “이 조례에 따른 예우”로, “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두고 국가 보훈처에 등록된”을 “둔”으로, “수당 등’ 이라고 한다.)을 지급 할”을 ““수당 등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참전명예수당 또는 참전유공자”를 “참전유공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보훈의달”을 “보훈의 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

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2. 참전명예수당

- ② 제1항제2호의 참전명예수당은 80세부터 지급한다.
- ③ 제1항제3호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.
- ④ 제1항제4호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위로금 :”을 “위로금: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망 위로금 :”을 “사망위로금: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배우자수당 :”을 “배우자수당: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2호 및 제4호”를 “제2호, 제3호 및 제5호”로, “전일”을 “전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11조제4호의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.

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김포시 보훈복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보훈단체”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「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·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.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4조(예우 대상자) 예우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보훈단체”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「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·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예우 대상자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----- 다음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

② 제1항제2호 중 참전명예수당은 80세부터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. ,

<신 설>

<신 설>

제12조(신청방법 및 시기) ① 제11조의 수당 등을 최초로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과 지급중지 후 재신청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해당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보훈명예수당, 참전명예수당, 독립유공자명예수당, 그 외 위로금 : 별지 제1호 서식
2. 사망위로금 : 별지 제2호 서식
3.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: 별지 제4호 서식

② ~ ⑤ (생략)

제13조(지급결정 및 지급) ① (생략)

② 제11조제1호, 제2호 및 제4호의

② 제1항제2호의 참전명예수당은 80세부터 지급한다.

③ 제1항제3호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.

④ 제1항제4호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.

제12조(신청방법 및 시기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위로금: -----  
-----
2. 사망위로금: -----
3. ----- 배우자수당: -----  
-----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지급결정 및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2호, 제3호 및 제5

수당 등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, 지급일이 토·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③ 제11조제3호의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일 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한다.

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전날-----.

③ 제11조제4호의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.

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